

2.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2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처와 산학처를 두며, 연구처에는 연구 기획팀, 연구지원팀, 기술지원센터를 산학처에는 산학협력팀, 기술사업화팀을 둔다.</p> <p>②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력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처와 산학처를 두며, 연구처에는 연구 기획팀, 연구지원팀, 기술지원센터를 산학처에는 산학협력팀, 기술사업화팀을 둔다.</p> <p>② 산학협력단에는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추진 및 연구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따로 둘 수 있으며, 해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무규정에서 정한다.</p> <p>③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직원 및 연구원 등을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력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